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직업성 질환의 발생원인 규명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전·현직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항).
- 소방청장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받아 개인 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해당 전·현직 소방공무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II. 검토의견

- 안 제17조제4항은 소방청장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하게 된 경우 정보주체인 전·현직 소방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법) 제20조제2항의 내용과 유사한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은 정보주체가 아닌 자료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생략)

- 안 제17조제4항은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 배경이 되는 수집 대상 정보를 개인정보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어 문언상 개인정보법 제20조제2항과 차이가 있으나, 개인정보법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통상 연락처 등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양자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평가됨.

구 분	수집 정보	의무 내용
개인정보법 제20조제2항	개인정보법 제2조제1호 가목·나목·다목	◦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 정지 요구권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 연락처 등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
개정안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법 제2조제1호 가목·나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제17조제4항의 문언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개인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비하여 미흡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법 제20조제2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7조(역학조사) ① · ② (생 략)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u>필요하면</u>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제17조(역학조사)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u>필요한 경우</u>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개정안과 같음)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u>개인정보 보호법</u>」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u>개인정보</u>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u>모든 사항</u>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⑤ · ⑥ (생략)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u>개인정보 보호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개인정보</u>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u>사항</u>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개정안과 같음)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	--

-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